

[사 건 명] **행심 2013-3**

**학교폭력피해에 따른 가해자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2012.11.29. 보복폭행과 관련하여 가해자 ○○○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청구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 사건 1 ]**

가. 2012. 8. 27. 점심시간에 가해학생 ○○○이 청구인의 반찬(미트볼 1개)을 허락 없이 먹고 사과 없이 감.

나. 2012. 8. 29. 청구인은 가해학생 ○○○의 반을 지나가다가 이틀 전 급식소의 일이 생각 나 자고 있던 ○○○의 책가방을 들어 땅바닥에 떨어뜨려 이 충격으로 가방속에 있던 ◇◇◇ 액정에 금이 감.

다. 가해학생 ○○○은 ◇◇◇ 수리비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 2012. 8. 29. 폭력유무에 대해 청구인과 가해학생 간의 진술이 상반됨.
- 2012. 8. 30. 어깨·등을 3~4회 정도 때림.
- 2012. 9. 3. 허벅지를 몇차례 가격함.
- 2012. 9. 4. 가슴을 때림

라. 2012. 9. 3. 청구인이 폭력사실에 대해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접수되어, 2012. 9.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결과를 2012. 9. 13. 청구인에게 송부함.

구분		조치결과
가해학생	○○○	· 특별교육이수 5일 · 부자일체 감동캠프 5시간(학부모동반) · 서면사과
피해학생	△△△	· 원스톱 지원센터 프로그램 및 Wee센터 프로그램 참가 · 지속적 교내상담 실시

## [ 사건 2 ]

가. 2012. 11. 22. 가해학생 ○○○○이 평소 자신을 짜러본다고 느낀 청구인은 점심 시간 급식실에서 가해학생이 또 다시 자신을 짜러본다고 느껴지자 가해학생 ○○○○에게 “눈 깔아”라고 말함.

나. 가해학생 ○○○○이 다가서자 “때릴거면 때려봐”라고 말했고, 이에 가해학생 ○○○○은 청구인의 왼쪽 뺨을 때림. [가해학생 ○○○○은 때리지 않고 얼굴을 세계 밀고 급식실을 나왔다고 진술함]

다. 이에, 피해학생 ○○○○은 학교폭력전담기구에 신고하여 2012. 11. 2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2012. 11. 29. 송부함.

구분		조치결과
가해학생	○○○	· 특별교육이수 4일 · 부자일체 감동캠프 5시간(학부모 동반)
피해학생	△△△	· 전문상담 프로그램 참가

라. 청구인은 상기 폭력을 사유로 가해자 ○○○○을 인천지방검찰에 고소·고발하였으며, 가해학생 ○○○○은 2013. 2. 26. 폭행·상해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가. 사건 1가 발생한 후 개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의 전학을 요구했으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후 가담자와 보복폭행(사건 2)까지 있었음에도 전학이 이루어지지 않음.
- 나. 피해학생 △△△는 이 사건 사고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가해학생 △△△의 머리만 봐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이 힘들어 하므로 가해학생을 전학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함.
- 다. 가해학생이 일주일동안 폭행과 욕을 하고(사건1) 그 뒤 11월에 또 뺨을 때리고 밀치며(사건 2), 삼개월에 걸쳐 욕하고 등 뒤에서 찌러본 것은 의도적, 계획적인 보복폭행이 분명하며, 청구인이 '눈깔야'라고 한 것은 이유없이 괴롭히고 자꾸 쳐다 본것에 대한 항의로 봐야함.
- 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사과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 조차 받지 못했으며, 형사 조정시에도 조정관 앞에서 함께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화를 낸 적이 있음.
- 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시 청구인의 신경정신과 검사기록 두 개를 복사해 제출하였더니 상담교사는 병원기록을 무시하고 이 사건 발생 전 상담교사가 상담한 기록만을 말하면서 청구인을 장애로 몰고 감.
- 바. 최근, 피해학생 △△△가 공황장애 증상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 ○○○을 전학 처분해 주길 간절히 바람.

###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가.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진술을 토대로 결

정된 처분이며, 폭력행위가 지속성과 계획성이 없었고,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으며 피해학생의 오해로 일어난 점과 피해학생 △△△가 가해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눈깔아” “때릴거냐? 때릴테면 때려봐”라고 먼저 도발한 점, 가해학생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특별교육이수 처분 등을 내림.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담교사의 장애인 발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른 상담에서 ‘청구인이 부모님이 서로 다투거나 엄마한테 혼나면 불안한 반응을 보인다’고 상담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우리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네요”라며 오해하였으며 이런 오해로 청구인은 학교측에서 제기한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검사와 지속적 상담조치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상담을 원치 않고 있음.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이루어지며 가·피해학생의 합의와는 무관함.

라.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설명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청구인에게 우편통보를 하였으나 지역위원회를 통해 기일내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령과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본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함.

## IV.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8조, 제16조

### 2. 위원회의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1) 2012. 8. 27. 점심시간에 가해학생 ○○○이 청구인의 반찬(미트볼 1개)을 허락없이 먹고 사과없이 간 사건으로 인해 2012. 8. 29. 가해학생 ○○○의 책가방을 떨어뜨려 가방 속 아이패드 액정에 금이 간 사건이 발생함.
- 2) 가해학생 ○○○은 이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몇차례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상담교사가 이를 알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접수하여 2012. 9. 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됨.
-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이 청구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5일, 서면사과, 학부모동반 부자일체 감동캠프 5시간’의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조치결과를 2012. 9. 15. 송달받음.
- 4) 이 사건 발생 3개월 후 인 2012. 11. 22. 가해학생 ○○○이 평소 자신을 짜러본다고 느낀 청구인은 점심시간 급식실에서 또 다시 자신을 짜러본다고 느껴지자 “눈 갈아” “때릴거면 때려봐”라고 말했고 이에 가해학생 ○○○은 청구인의 뺨을 때림.
-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학생 ○○○에게 ‘특별교육이수 4일, 학부모동반 부자일체 감동캠프 5시간’의 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조치결과를 2012. 11. 30. 송달받음.
- 6) 청구인은 상기 폭력을 사유로 가해학생 ○○○을 인천지방법원에 고소·고발하였으며 가해학생 ○○○은 2013. 2. 26. 폭력·상해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7) 청구인은 2013. 4.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해자의 전학 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나.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적법 여부

- 1)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보서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부인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위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건1에 대하여는 2012. 9. 13에 사건2에 대하여는 2012. 11. 29에 처분을 하였고, 사건1은 2012. 9. 15.에 사건2는 2012. 11. 30.에 이 사건 처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사건 1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9. 15.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2013. 4. 4.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6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사건 2에 대하여는 이 사건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2. 11. 30.부터 180일이 초과하지 아니하여 심판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이다.

- 2)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나아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사실상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러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317 판결),

이 사건의 피해학생인 청구인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행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가해학생의 전학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한 바, 청구인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3)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고등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하여 행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케 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